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434
----------	------

2023년 1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3년 10월 16일

다. 회부일 : 2023년 10월 23일

라. 상정일 :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11월 23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종원 평생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특화시설인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3. 12. 31. 만료 예정이고,
- 교육정책 환경변화와 진로탐색 및 체험의 수요증가에 따라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미래진로 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운영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추진의 필요성

-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청소년특화시설로 청소년의 다양한 수준에 맞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미래 진로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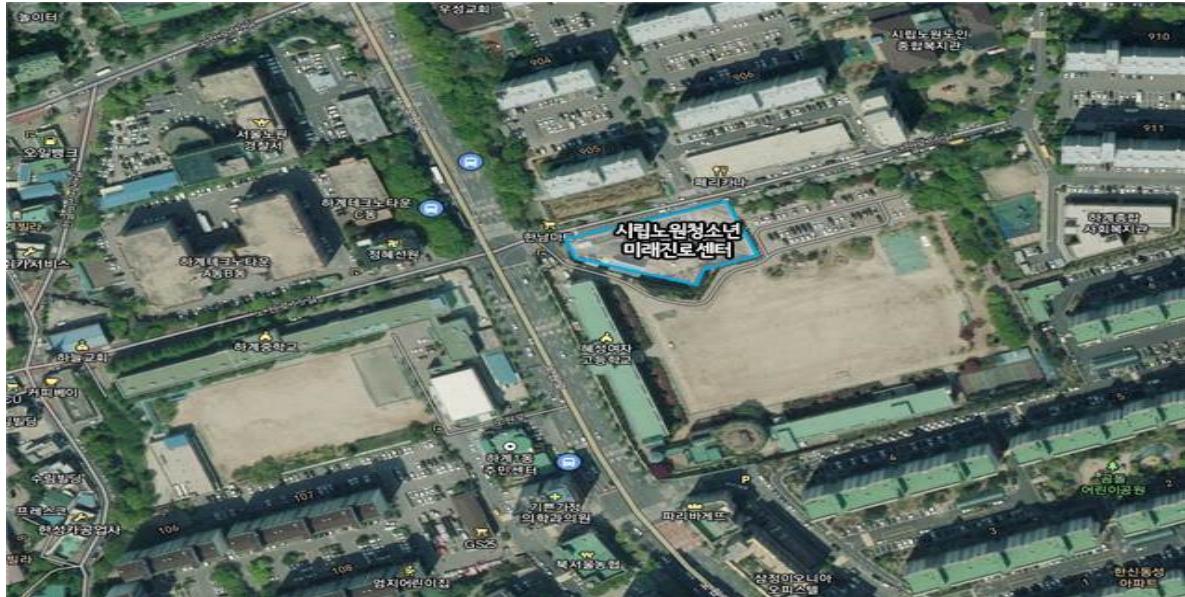
3)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보급
- 대안적 삶과 진로 탐색을 위한 대안교육과정 운영

- 청소년의 창의적 진로체험활동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 미래 사회를 살아갈 청소년을 위한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 그 밖에 청소년미래진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4)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16길 16
- 개관일자 : 2019.06.27
- 시설규모 : 부지 $2,519m^2$ / 건물 $3,299.76m^2$
- 주요시설 : 멀티플렉스, 로봇 스페이스, 자율주행체험관, 스마트 라이프 체험관, 스마트팜, 드론랩, E-Sport랩, 앤드커리어랩, 크리에이터스튜디오, IoT스페이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3년(2024.1.1 ~ 2026.12.31.)

6)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593백만원(2023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040백만원, 운영비 313백만원, 사업비 1,012백만원,
사업외지출및기타 228백만원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동의안은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에서 2019년부터 운영하던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청소년단체에게 본 시설을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운영 〉

- 위탁사무명 :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운영
- 위탁사무
 - 청소년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보급
 - 대안적 삶과 진로 탐색을 위한 대안교육과정 운영
 - 청소년의 창의적 진로체험활동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 미래 사회를 살아갈 청소년을 위한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 그 밖에 청소년미래진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소재지: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16길 16
- 개관일자: 2019.06.27
- 시설규모: 부지 2,519m² / 건물 3,299.76m²
- 주요시설: 멀티플렉스, 로봇 스페이스, 자율주행체험관, 스마트 라이프체험관, 스마트팜, 드론랩, E-Sport랩, 앤드커리어랩, 크리에이터스튜디오, IoT스페이스 등
- 민간위탁기간: 3년(2024.1.1 ~ 2026.12.31.)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소요예산: 2,593백만원(24년, 인건비 1,040백만원, 운영비 313백만원, 사업비 1,012백만원, 사업외지출및기타 228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생략)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 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생략)

- 2019년 6월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란 명칭으로 개관 후 2021년 2월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이하 '본 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본 센터는 23명이 총 4층(지하1, 지상3층)의 시설에서 3개 분야, 6개 사업, 34개 프로그램 통해 진로·직업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스스로 진로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 평생교육국은 본 센터를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어, 민간위탁 방식으로 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임.

〈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인력 현황 〉

(단위 : 명)

구분	총계	정 규 직										비 정 규 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교용	소계	계약	기타
정원	22	22	1	1	2	3	5	5	4	1	0	0	0	0
현원	22	13	1	0	1	2	0	6	2	1	0	9	7	2

〈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공간현황 〉

(단위 : m²)

구분	면적	시설 내용
총계	3299.7m ²	공유면적(849.9m ²), 전용면적(2449.8m ²)
지하층	1125.7m ²	기계실(129.5m ²), 전기실(49.7m ²), 발전실(29.2m ²), 관리실(24.6m ²), 스튜디오(84.6m ²), 비품실(13.3m ²), 아지트(43.7m ²), 아지트주방(29.3m ²), 아지트식당(53.7m ²), 다목적 강당(144.9m ²), 창고(7.7m ²), 준비실(21.8m ²), 대기실(20.1m ²), 주차장(455.11m ²), 자활용폐기물보관소(18.3m ²)
지상층	473.3m ²	메이커 스페이스(54.78m ²), 로봇 스페이스(62.3m ²), 홀로그램&3D 스캐닝 스페이스(102.21m ²), 3D 프린터실(26.08m ²), AR 스페이스(28.5m ²), IOT 스페이스(39.56m ²), 멀티플렉스(150.52m ²), 크리에이터스튜디오(9.3m ²),
지상2층	541.8m ²	사무실(108.2m ²), 센터장실(28.8m ²), 자율주행체험관(102.2m ²), 자율주행체험관(창고)(25.9m ²), 방재실(24.6m ²), 미디어콘텐츠랩(46.6m ²), AR&VR랩(45.8m ²), 디자일드로잉랩(47.m ²), 브레인스토밍룸(62.4m ²), 앤드팜(49.8m ²),
지상3층	309.1m ²	드론랩(69.9m ²), 드론 경기장(25.9m ²), E-Sports랩(47.319m ²), 강의실1(49.8m ²), 대강의실(116.2m ²),

〈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재위탁·재계약 추진경위 〉

- 2019.01.01.~ 2021.12.31. 신규위탁 (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 2022.01.01.~ 2023.12.31. 재계약 (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 본 센터는 청소년 직업·진로 등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시설로, 청소년의 진로 선택, 직업탐색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시설로,
 - 직업, 진로, 체험 등에 대한 사무를 일반행정에 최적화되어 있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확보한 청소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하겠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첫째, 평생교육국은 본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부정적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정상적 심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예산> 동의안은 민간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총 25억 9천 3백만원으로 제출하고, 본 동의안 관련한 별도 제출자료에서는 15억 4천 9백만원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는 본 동의안과는 다르게 배정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제출하고 있어, 본 시설의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총액 대비 사업비의 비중, 인건비와 사업비의 적정 배분 등 예산의 규모와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상황임.

〈 2023년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제출자료별 예산 내역 〉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사업비외지출/ 예비비. 기타
본 동의안	2,593	1,040	313	1,012	228
제출자료	1,549	866	253	430	-
23년 행감자료	2,593	848	618	899	228

출처 : 본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본 동의안 관련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 <성과보고서> 의회는 민간위탁 기간(2022~2023년)의 성과로 본 동의안을 심의하고,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을 규율하는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 동안 추진한 위탁사무 및 운영 등을 평가한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 평생교육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는 2021년의 성과(2022년 평가)를 제출하고 있어, 위탁기간 동안의 실적·성과, 시설 유지의 필요성,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사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할 수 있을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성과보고서 개요

- 수행기관 : 서울시(청소년정책과) 및 전문조사기관(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
- 평가기간 : 2021년도(실시기간 2022. 3. ~ 8.)
- 평가범위 : 시설 및 사무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전반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 만족도 조사결과 포함
- 평가결과 : 98.0점(100점 만점)

- 평생교육국이 최근 종합성과평가(위탁기간 만료 90일전 완료)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심의 권한 약화를 위해 2년 전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종합성과 평가를 미시행하여 부적정한 성과를 제출하는 등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의 종합성과평가

-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기관 만료 90일 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종합성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전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 성과보고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에 의해 다른 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청소년시설을 규율하는 법령(「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조례(「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본 성과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평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 기관 만료 90일전 종합성과평가를 반드시 종료해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에 성과보고서로 제출해야 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8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실적부풀리기) 본 시설의 수용정원은 450명이며, 2023년 계획은 청소년 이용자 수를 18만 8천여 명으로 계획했고, 2023년 9월까지 12만 3천명이 이용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2022년 실적도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하고 있음.

※ 본 시설의 2023년 실적은 제출되지 않아, 2023년 행감자료를 참고함.

〈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사업 목표와 실적 〉

(단위: 천원)

연도	목표	실적	비고
2020년	54,362	104,082	
2021년	119,970	154,035	
2022년	168,648	186,771	
2023년	188,861	123,014	2023년 9월말 기준

출처 : 2023년 행정사무감사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재구성(연도별 사업별 실적의 합산)

- 2023년 목표 인원(188,861명)과 2022년의 실적(186,771명) 등을 본 센터의 수용정원으로 나누어 보면, 공휴일 없이 420일 이상 운영해야 가능한 숫자이며, 온라인 교육 등을 감안하여도 현실성 있는 성과인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평가위원회도 이러한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평생교육국은 명확한 기준제시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음.

- 한편, 본 센터의 사업 계획 인원 18만여명 중 14만 7천명은 “지역사회 소통연결 허브”라는 사업으로, 대부분 축제참여자, 대회, 작품전시, 카페 이용, 나눔 활동, 홍보물, SNS 등 블로그 및 카페 방문자, 본 센터와 관계없는 축제의 참여자까지도 본 센터의 실적으로 계산하여 제출하고 있는바,
 - 본 센터의 수탁기관은 진로·직업 관련 이용자가 아닌 지역 축제 등의 행사 인원을 본 센터의 성과로 측정하고, 평생교육국은 검증이나 여과 없이 과대 산정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한 의회의 판단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2023년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사업 계획 〉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요약)	목표(명)	실적(명)
1	청소년핵심 역량강화	(생략)	16,600	1,256
2	미래인재 성장지원	(생략)	20,435	15,352
3	진로디자인 센터운영	(생략)	4,750	5,074
4	지역사회 소통연결허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자교육: 미래기술 교육을 위한 지도자 양성 · Let's Go! 앤드페스티벌: E-스포츠 대회, 작품 전시 및 체험 <u>부스 운영</u>, 서울시 및 노원구 <u>연계 축제</u> 등 · ICT봉사단: 해외 소외지역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지원 등 · 찾아가는 앤드센터: 미래기술 교육지원, 학교 <u>축제지원</u>, 지역 <u>축제 부스 운영</u> · 앤드커리어랩 운영: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및 청소년 휴식 <u>카페 공간 운영</u> · 청소년에듀투어: 유관기관연합 청소년진로 및 체험 프로그램 · 앤드팜 운영: 작기를 위한 <u>스마트팜 유지관리</u> 및 생산 작물 지역사회 <u>나눔 활동</u> · 홍보사업: <u>센터안내</u>, <u>홍보물 제작</u>, <u>언론사홍보</u>, <u>홈페이지</u> 및 <u>SNS채널 운영</u> 	147,076	101,332

- ‘지방의회의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 동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추121 판결)이나,
 - 평생교육국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회 권한(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심의)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바, 의회의 권한에 대한 침해 방지하고, 시민이 부여한 견제·감독이라는 의회의 기능을 유지·강화를 위해, 평생교육국의 법령·조례 등의 준수 여부 감사 요구, 권한 침해의 원인 규명,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추121 판결문 발췌

-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 둘째, 노원진로센터의 민간위탁 종료시기는 2023년 12월 31일이고, 정례회의 특성상 동의안은 11월 중순으로 예산과 함께 심의된다는 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가 지연될 경우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점, 청소년에 대한 공공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 평생교육국의 본 동의안 제출 시기(2023년 10월 26일)는 과도하게 늦은 것으로 보이며, 평생교육국은 동의안의 지연제출은 심의 기간 단축, 의결(원안, 보류, 부동의 등) 제한 등 의회의 심의권을 다시 한번 제약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의회권한 침해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

- 셋째,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의 ‘심사 보류’의 결과로 인해 재심사 후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동의안의 지연제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 ‘심사 보류’의 원인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 평가위원회는 은평구 혁신파크 내 위치한 ‘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이하 ‘은평센터’)는 혁신파크 개발계획에 따라 이전을 해야 하나, 이전하지 않고 은평센터를 폐쇄한 것과 관련하여 본 센터(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차별성 부재, 권역화 등 장기전략 필요, 불명확한 이용 인원 등을 이유로 심의 보류 (제4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2023.7.5.)한바 있음.

〈 2023년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2023.7.5.)

위탁사무명	심의결과	비고
노원청소년 미래진로센터 관리 및 운영	심의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시설과 비교하여 청소년특화시설로서의 특징이나 차별 점이 명확하지 않음 - 미래진로센터가 기존 3개소(시립, 은평, 노원)에서 2개소(시립, 노원)로 축소되었음에도 서울 전체를 커버하는 권역별 전달체계 등 장기 발전전략 부재 - 센터 위치에 따른 접근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 마련 등 서울 전역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 이용인원 집계시 프로그램별 온·오프라인 참여자 수를 분리하고, 단순 SNS참여자 수를 별도 관리하여 실질적인 이용인원 목표수립 및 증대방안 마련 - 자치구 또는 교육청 업무이관 가능성 검토(장기과제)

※ 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폐쇄.

- 은평센터는 혁신파크 재개발로 인해 이전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전부지를 찾지 못해 폐쇄하였고, 이 과정에서 평생교육국은 자치구 또는 교육청 이관도 고려했으나, 자치구와 교육청 모두 거절하여, 시설의 이전은 추진하지 않고, 폐쇄했음.

- ※ 평가위원회는 은평센터가 반드시 필요했다면 ‘적격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폐쇄한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폐쇄되었다면, 폐쇄된 센터의 기능 등을 동종의 타 센터로 분산 배치를 했어야 하나, 평생교육국은 아무런 조치 없이 폐쇄했다는 점을 들어 본 센터의 운영 적정성 검토 중 다수의 지적으로 인해 심사 보류되었고, 심사위원들이 충족할 수 없는 향후 운영계획을 제출하여 조건부 추진의 결과를 얻었음.
- 재심사(제6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2023.8.29.) 시에도 ‘조건부 적정’의 결정 (장기 전략 수립 - 운영목표 명확화, 권역별 운영방안)이 있었고, 조건부 이행 후 ‘적정’의 결과를 받았음.

〈 2023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2023.8.28.)

위탁사무명	심의결과	비고
노원청소년 미래진로센터 관리 및 운영	조건부 적정	[조건] - 은평센터 종료 이후 청소년미래진로센터 중장기 운영방안이 부재한 상태로, 서울시 시정철학을 반영한 장기전략 제시 필요(센터 운영목표 명확화, 권역별 운영방안 마련 등)

〈 2023년 제6차 조건부 이행 결과 〉

(2023.9.15.)

위탁사무명	심의결과	비고
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관리 및 운영	적정(조건 이행)	

- 평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후 ‘조건부 적정’의 결과를 내린 것의 원인은 수탁기관 및 관리·감독 기관 모두에게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한 것 외에 평생교육국의 대응이나 대처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본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평생교육국의 개선 대책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 넷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사무만을 민간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진로교육법」은 진로교육에 대한 책무를 교육부와 교육감에게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을 통해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진로지도는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교육장(교육지원청의 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는 교육감이 진로체험·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진로교육센터를 두고, 11개 교육지원청마다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 진로 및 직업에 관한 교육을 시장의 사무로 볼 수 있는지,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시장의 사무가 아닐 경우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진로교육법」이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 등에게 부여한 책무

- 현황조사(제6조), 목표와 성취기준(제8조), 진로전담교사(제9조), 진로심리검사(제10조), 진로상담(제11조),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제12조),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제13조), 지역진로교육센터(제16조), 지역진로교육협의회(제17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19조), 협력 체계 구축 등(제20조), 보호자 등의 참여(제21조), 진로교육 콘텐츠(제22조), 시·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제23조)

※ 「진로교육법」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한 책무

-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 8. (생략)

※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 제9조(진로교육센터) 교육감은 다양한 진로진학정보 및 진로진학상담 서비스 제공,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며, 교육지원청별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둈다.

· 제10조(센터의 업무) 제9조의 센터 및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 관리
2.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4. 지방자치단체, 기업,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다섯째, 민간위탁 시설의 설치·유지가 곧 성과라는 인식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교육청은 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대해 느리게 반응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는 교육청에 비해 조금 빠르게 대응하나, 서울특별시는 법령에 따라 소관 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요구를 해소한다며, 담당 행정기관과 사업에 대한 협의나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리할 전문성도 없어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집행기관에서 “시설확대(추가설치)는 곧 성과다”라는 인식은 원칙(시설설치 → 성과 → 승진)처럼 굳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탁기관은 시설의 추가 설치를 ‘더 많은 시설의 수탁’으로 인식하여, 집행기관과 수탁기관 사이에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져, 분별과 제한 없는 민간위탁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 집행기관은 더 이상 추가설치가 불가능하고, 과도한 운영비, 저조한 실적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있으면, ‘시설복합화’ 또는 ‘원스톱서비스 통합’ 등의 개선 대책으로 비판 등을 회피하거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어려울 경우 교육청이나 자치구로 이관하거나, 사업을 폐지하고 있음.

* 교육청·자치구 이관사업 또는 재원 부담 전가 사업 또는 폐지사업

- 학교화장실 만들기, 혁신교육지구, 까치서당, 학습준비물 지원, 영어마을, 지역인재 육성 및 역량강화사업, 모두의학교 확산, 동네배움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대안교육기관 지원, nonGMO 차액지원사업, 도농상생 공공급식, 학교CCTV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체험학습버스 지원, 학교시설 개방 우수학교 지원,
- 이와 같은 상황을 본 센터에 대입해 보면, 위탁하는 사무는 서울특별시의 사무가 아닌 교육청의 사무로 보이고, 수탁기관은 ‘성과를 만들며’, 집행기관은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효과성 여부 등을 검증도 하지 않고 있으며,
 - 이러한 부실은 의회에 제출한 충실하지 못한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바, ‘하자(서울특별시 소관 외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수탁기관의 부실 운영 및 담당 행정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 등) 있는 민간위탁 추진도 성과’라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평생교육국에 요구된다고 하겠음.

- 타 청소년시설(은평성문화센터)과 같이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 이전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닌, 본 센터와 유사한 은평센터의 경우에는 ‘운영의 어려움(시설 이전)’ 발생 직후 교육청 및 자치구 이관을 시도하고, 이관 시도가 실패하자 시설을 폐쇄한 것을 고려해 볼 때, 본 센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유지한다면 민간위탁 방식이 적정한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직업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나, 본 위탁사무가 시장의 사무인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시장의 사무로 판단될 경우, 수탁기관의 부실 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 감사위원회 감사 요구, 부적정 운영에 대해 수탁제한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434
------------	------

제출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특화시설인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 12. 31. 만료 예정이고,
- 나. 교육정책 환경변화와 진로탐색 및 체험의 수요증가에 따라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미래진로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추진의 필요성

-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 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청소년특화시설로,
- 청소년의 다양한 수준에 맞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미래 진로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보급
- 대안적 삶과 진로 탐색을 위한 대안교육과정 운영
- 청소년의 창의적 진로체험활동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 미래 사회를 살아갈 청소년을 위한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 그 밖에 청소년미래진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16길 16
- 개관일자 : 2019.06.27
- 시설규모 : 부지 2,519m² / 건물 3,299.76m²
- 주요시설 : 멀티플렉스, 로봇 스페이스, 자율주행체험관, 스마트 라이프체험관, 스마트팜, 드론랩, E-Sport랩, 앤드커리어랩, 크리에이터스튜디오, IoT스페이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4.1.1 ~ 2026.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593백만원('23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040백만원, 운영비 313백만원, 사업비 1,012백만원,
사업외지출및기타 228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팀 김유진(☎2133-4121)